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00
----------	-------

발의연월일 : 2026. 4. 13.

발 의 자 : 이인영 · 채현일 · 전진숙
이정문 · 노종면 · 이강일
강준현 · 박상혁 · 민병덕
김남근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신의성실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원칙을 두고 있음.

그러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령의 실질적인 취지와 목적을 준수하기 보다는 법령에 규정된 문언을 단순 이행하는데 그치고 있어 내부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적절하게 작동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선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원칙을 마련하고,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제재 감경근거를 둬으로써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현행법상 판매규제를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 규정함(안 제13조의 2 신설).
- 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마련하여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3항).
- 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그 업무범위와 자격,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겸직 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 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5 신설).
- 마.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그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등을 준수한 사실 또는 준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준수정도에 따라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 4항 및 제52조제6항 신설).
- 바. 과태료 부과근거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고 보험설계사와 카드모집인에 대하여는 과태료 수준을 현실화함(안 제69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금융소비자보호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우선하지 아니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고, 그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내부통제체계의 실효적인 운영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신의성실의무 등)”을 “(신의성실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관리책임”을 “관리책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을 “마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를 제16조의6으로 하고,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임면 등)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반의 총괄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 및 운영
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제도 개선
4.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

면에서의 관리·감독 및 점검

5. 민원·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
 6.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7.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8.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금융상품 개발·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의 운영
 9. 내부통제기준 및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마련되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
 10.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점검 및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후속조치
 11. 금융상품 판매동향 점검, 판매량 급증 등 이상징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이사회에 그 결과 보고
 12.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사내이사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및 영위하는 업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를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그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로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의3(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①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5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라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한다). 다만, 제1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한다)으로 한다.
- 나. 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람에 준하는 경력 또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가 된 사람이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16조의4(겸직 금지 등)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금융회사의 겸영업무

제16조의5(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외한다)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구성 및 회의 개최 주기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사항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제5항 본문 중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구”를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로 한다.

제18조제4항 본문 중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로 한다.

제30조제5항 중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제5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수한 사실 또는 준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준수 정도에 따라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수한 사실

또는 준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준수 정도에 따라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67조의2 중 “제16조의2제3항”을 “제16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6조의2제1항”을 “제16조의6제1항”으로 한다.

마.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4.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자료를 은닉·폐기·누락하거나 자료의 접근을 거부한 자

1.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자
 3. 제1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1. 제16조의4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2. 제6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신 설>

· 중개업자가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임면 등)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반의 총괄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 및 운영

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제도 개선
4.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관리·감독 및 점검
5. 민원·분쟁의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한 관리
6.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7.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8.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금융상품 개발·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의 운영
9. 내부통제기준 및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마련되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
10.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점검 및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후속조치

11. 금융상품 판매동향 점검, 판매량 급증 등 이상징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이사회에 그 결과 보고

12.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사내이사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및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를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선임하려

는 경우에는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그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로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3(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①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5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라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한다). 다만, 제1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한다)으로 한다.

나. 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람에게 준하는 경력 또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가 된 사람이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신 설>

제16조의4(겸직 금지 등)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신 설>

3. 해당 금융회사의 겸영업무
제16조의5(금융소비자보호 내부
통제위원회)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
업자등은 제외한다)은 금융소
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
구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
원회의 심의·의결사항, 구성
및 회의 개최 주기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에 따른 심의·의결사항을 금
융상품판매업자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내부통
제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
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
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생략)

제17조(적합성원칙) ① ~ ④ (생략)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생략)

제18조(적정성원칙) ① ~ ③ (생략)

④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

수 있다.

제16조의6(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현행 제16조의2와 같음)

제17조(적합성원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금융소비자-----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적정성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제30조(금융교육) ① ~ ④ (생략)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금융교육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 ~ ③ (생략)

<신설>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금융교육)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
직원에 대한 조치) ① ~ ⑤
(생략)
<신설>

제67조의2(벌칙) 제16조의2제3항

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수한 사실 또는 준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준수 정도에 따라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
직원에 대한 조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수한 사실 또는 준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준수 정도에 따라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67조의2(벌칙) 제16조의6제3항-

한 자는 제외한다.

가. ~ 라. (생략)

<신설>

7. ~ 13. (생략)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신설>

<신설>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 13. (현행과 같음)

14.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자료를 은닉·폐기·누락하거나 자료의 접근을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은 제외한다)-----

-----.

1.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자

3. 제1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1. ~ 7.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신설>

1. ~ 3. (생략)

④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 10. (현행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③ -----

-----.

1. 제16조의4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2. 제6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

3. ~ 5.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④ 제16조의6제1항-----

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